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국가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이자
지원한도와 지원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타당함으로 이에 일부개정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제7조(이자 비용 지원) ① (생략)	제7조(이자 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이자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5퍼센트 이내의 이자	1. ----- -- 4퍼센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지원 기간 : 2년 이내	3. ----- 3년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7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jajaja4400@korea.kr
-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37-7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